

논문 2018-2-3

# 법정조언자 제도와 소프트웨어감정 제도의 비교 연구

김시열\*, 김민정\*\*

## A Comparative Analysis on Amicus Curiae and Software Appraisal in the Copyright Act

Si-Yeol Kim\*, Min-Jeong Kim\*\*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 제119조에 근거한 감정제도,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법정조언자 제도가 우리나라의 감정 제도와 정확하게 대비되는 대상은 아님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교해 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법정조언자 제도는 소송과정에서 정보제공 기능, 전문분야에 대한 법원의 이해 지원,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제공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감정은 최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적극성이 좀 더 요구된다는 평가를 얻는다. 따라서 법정조언자 제도와 비교하여 감정의 관여 수준 정도, 감정의 적극성 수준,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감정, 감정비용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n appraisal system based on Article 119 of Korean Copyright Act, especially the appraisal of computer program works, by reviewing the amicus curia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amicus curiae system is not exactly a target contrasted with the Korean appraisal system, it is meaningful to compare them in various aspects. The amicus curiae system is viewed positively for its func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during litigation, supporting the court's understanding of specialized field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participate. As for software appraisal syste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n the other h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is deman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u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micus curia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the degree of appraisal involvement, the level of activeness in appraisal, the appraisal by expert groups, and the issue of appraisal costs.

**한글키워드 :** 법정조언자, 소프트웨어감정,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소송

**keywords :** Amicus Curiae, Software Appraisal, Copyright Infringement, Substantial Similarity, Litigation

### 1. 서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email: sykimlaw@hanmail.net)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접수일자: 2018.11.30. 심사완료: 2018.12.10.

게재확정: 2018.12.21.

현대형 소송의 주요한 특징으로 사실확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분쟁에 대하여 최종 판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실확인이

라는 소전제의 충족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판단의 주체인 법관의 지적 영역에는 한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사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관에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감정제도(저작권법 제119조)를 두고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개별법에 직접 근거한 공적 감정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나, 전문영역에 대하여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은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스터(Master)’ 제도<sup>1)</sup>,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sup>2)</sup>를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들 가운데 우리 저작권법상의 감정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조언자 제도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 우리 저작권법상의 감정제도와 비교해볼 수 있는 점에 비교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작용은 다르지만, 우리 감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유사한 제도가 없는 우리 저작권법상 감정제도는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으로 대비해볼 제도가 없지만, 법정조언자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법정조언자 제도에 관하여 제도 내용과 평가 등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저작권법 제1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감정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법정조언자 제도 및 평가

### 2.1 제도의 기원 및 발전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는 라틴어로 ‘법정의 친구(friend of court)’를 의미하며,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소송물에 큰 이익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요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sup>3)</sup> 법정조언자 제도의 기원은 불명확하지만 크게 보통법(Common Law) 기원설과 로마법(Roman Law) 기원설로 나뉘며,<sup>4)</sup> 로마법 기원설이 통설이다.<sup>5)</sup> 로마에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전통에 따라 모든 정책결정과 입법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

3) Black's Law Dictionary(8th ed), 2004, 263면.

4) S. Chandra MOHAN, "The Amicus Curiae : Friends No More?",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Dec. 2010, 4면.

5) S. Chandra MOHAN, 상계논문(2010), 4-14면;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3, 5면; 조재현, “헌법재판에서 법정조언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46호, 2014, 8면 등 참고.

1) 마스터(Master)는 법원에 의하여 판단의 조력자로서 특별한 사안의 해결 및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연방민사절차규칙 Rule 53에서 규정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6-78면 참조.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야 공적감정제도 도입의 주요문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 2016, 7면 참조.

고, 로마 황제 역시도 가까운 친구(amicus)로 구성된 고문위원회(consilium principis)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로마 황제는 고등교육을 받은 법학자들을 고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여러 정책결정과 입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당시 저명한 법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에 따라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들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로마 사회에서 법학자 등 친구(amicus)의 역할은 로마의 입법, 행정, 사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자연스럽게 법정조언자 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6)</sup>

법정조언자 제도는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발전하였으며,<sup>7)</sup> 과거 역할은 중립적 조언자로서 법원에 법률 및 사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법원의 판단을 돕는 것에 한정되었다.<sup>8)</sup> 이때의 법정조언자는 소송에서 대립하는 이익이 없으며 당사자나 제3자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며 단순히 법원에 조

언과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sup>9)</sup> 1468년 영국에서는 ‘법정조언자 및 사법조언자(amicus curiae & amicus juri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모든 사람은 법원이 불충분한 기록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알릴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sup>10)</sup>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성격은 17세기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1736년 영국에서 *Coxe v. Phillips* 사건<sup>11)</sup>을 계기로 법정조언자 제도는 과거의 중립적 역할과 달리 소송당사자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sup>12)</sup>

미국 역시 법정조언자 제도를 폭넓게 활용한다. 미국 법원이 본 제도를 처음 도입할 시기에 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당시 미국에서 법원은 공익 및 국익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법정조언자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정조언자의 참여를 확대한 바 있다.<sup>13)</sup> 미국에서 처

6) S. Chandra MOHAN, 전계논문(2010), 12면.

7) 로마법 자체가 대륙법 체계의 기원이므로 영미법 국가가 이를 로마법에서 직접 계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륙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법정조언자 제도가 소송절차에 심각한 방해가 초래하지 않고, 집중심리와 같은 보통법적 성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를 갖는 국가에서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프랑스, 폴란드, 이스라엘 등 대륙법 국가들에서 법정조언자 제도를 입법하거나, 법원이 법정조언자 제도를 자체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Steven Kochevar, "Amici Curiae in Civil Law Jurisdictions", *The Yale Law Journal* 122(6) : 1653-1669, 2013. 참고.

8)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5면.

9) John Harrington, "Amici Curiae in the Federal Courts of Appeals: How Friendly Are They", 55 *Case W. Res. L. Rev.* 667, 2005, 673면.

10) Frank M. Covey Jr., "Amicus Curiae: Friend of the Court", 9 *DePaul L. Rev.* 30, 1959, 33면; S. Chandra MOHAN, 전계논문(2010), 5면.

11) *Coxe v. Phillips*, 95 *Eng. Rep.* R, 152 (1736).

12) 김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93-195면; 조재현, 전계논문(2014), 8-9면.

13) 클리스로프 교수는 "복잡한 연방제도의 탄생은 주와 국가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상충되는 공익의 수가 사적 소송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Helen A. Anderson, "Frenemies of The Court: The Many Faces of Amicus

음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것은 1821년 Green v. Biddle 사건<sup>14)</sup>을 계기로 한다.<sup>15)</sup> 이 사건은 법정조언자가 켄터키 주 및 당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조언자가 소송절차에 참가한 것이다. 한편, 국가 이외의 대상을 위한 법정조언자 제도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이 경우 초기에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이 법정조언자로 활동하였고, 1930년대 이후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이익집단, 전문가단체 등으로 활동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법정조언자가 활용된다.<sup>16)</sup>

현재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는 법정조언자의 참여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소송법상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 이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sup>17)</sup>

Curiae", 49 U. Rich. L. Rev. 361, 2015, 368면.  
14) Green v. Biddle, 21 U.S. 1 (1821); Helen A. Anderson, 상계논문(2015), 368-369면.

15) Green v. Biddle 사건 이전에, 법정조언자는 Betty's Administrators v. Burnes's Administrators (1814) 사건과 Livingston v. Dorgenois (1813) 사건에 참여하였으나, 동 법정조언자는 현대의 법정조언자와 다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들에서 법정조언자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구두변론을 하였고, Green v. Biddle 사건과 같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를 대표하지 않았다. Paul M. Collins, Jr., Friends of the Supreme Court: Interest Groups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9면.

16) Helen A. Anderson, 전계논문(2015), 368면; 법정조언자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0년대에 그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였고, 1950년대에는 다시 법정조언자의 참여를 증가시켰다.

하고 있을 뿐, 의견서의 내용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지 않는다.<sup>18)</sup>

## 2.2 제도 운영 현황

미국에서의 법정조언자 제도는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sup>19)</sup> 법정조언자의 참여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된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는 점차 증가하였고, 1946년-1955년 구간 대비 1986년-1995년 구간은 약 800%가 증가하였다.<sup>20)</sup> 이러한 증가는 법원이 법정조언자의 의견서를 잘 거부하지 않는 태도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본다.<sup>21)</sup> 이러한 흐름은 최근에 변화가

17) 연방대법원규칙 제37조는 "법정조언자의 의견서(Brief for an Amicus Curiae)"라는 표제 하에 의견서와 의견서 제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연방항소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29조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에 대한 조건, 절차 등을 규정하며, 연방항소심소송규칙이 연방대법원규칙 보다 의견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요건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 규칙이 거의 동일하다.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12-13면.

18)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44면.

19)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20면.

20)

구간	1946 -1955	1956 -1965	1966 -1975	1976 -1985	1986 -1995
건수 (구합)	531	743	2,042	4,182	4,907

21) Joseph D. Kearney and Thomas W. Merrill, "The Influence of Amicus Curiae Briefs on the Supreme Court", 148 U. Pa. L. Rev. 743, 2000, 752면.

발생하고 있다. 최근 7년간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의 수는 1946년에서 1995년 사이의 기간과 달리 점차 감소하였고,<sup>22)</sup> 대략 1956년에서 1965년 사이의 수준으로 근접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의 의견서 제출은 632건으로 지난 7년 사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단일 사건에서 제출되는 의견서 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사건<sup>23)</sup>도 그나마 단위기간 내 가장 의견서가 많이 제출된 사건임에도 총 35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sup>24)</sup> 한편, 최근 의견서는 주로 정부 의 민간영역에서 제출된 것이 대부분이다.<sup>25)</sup>

22)

구간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건수 (구합)	717	715	1,003	818	790	863

23)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581 U.S. Sup. (2017).

24)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567 U.S. Sup. 519 (2012)에서는 136건, *United States v. Windsor*, 570 U.S. Sup. 744 (2013)에서는 156건,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573 U.S. Sup. (2014)에서는 82건, *Obergefell v. Hodges*, 576 U.S. Sup. (2015)에서는 147건,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579 U.S. (2016)에서는 86건.

25) 2016년 부터 2017년 사이에 연방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29건, 주정부 등이 제출한 의견서는 24건인 것에 반하여, 민간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579건이다.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In Quiet Term, a Drop in Amicus Curiae at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Law Journal*, ALM Publication,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정조언자의 절대적인 활용 규모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소송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을 활용한 사건의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즉, 단위 사건당 법정조언자 의견서의 활용은 줄었지만, 법정조언자 의견서가 활용되는 사건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소송사건 중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의 비율은 1946년부터 1955년 까지 23.45%이었던 것이 1986년부터 1995년 까지는 85.10%로 증가한 바 있다.<sup>26)</sup> 특히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 비율이 92%에서 98%로 상승하였다.<sup>27)</sup> 이러한 흐름은 대부분의 연방대법원 사건에서 의견서의 제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점, 법원 역시 이러한 의견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28)</sup>

한편, 이들 의견서에 대한 인용률은 50%를 나타낸 바 있다.<sup>29)</sup>

2017.9.6;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In Unusual Term, Big Year for Amicus Curiae at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Law Journal*, ALM Publication, Sep. 2016 참고.

26) Joseph D. Kearney and Thomas W. Merrill, *전계논문*(2000), 753면.

27)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전계보고서*(Sep. 2017.) 참고.

28)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각 판사 별로 의견서에 대한 인용률을 살펴보면, 케네디(Kennedy) 판사는 약 50%, 토마스(Thomas) 판사는 약 7%, 고르수치(Gorsuch) 판사는 0%를 기록하였다.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전계보고서*(Sep. 2017.) 참고;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전계보고서*(Sep. 2016) 참고.

29)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의 인용률은 약 54%

## 2.3 제도의 세부 내용

### 2.3.1 법정조언자 참여 주체

법정조언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하며, 각각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단체, 이익단체 등 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정부기구, 소수자권익단체, 환경단체, 이익집단 등 많은 단체가 법정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익집단은 선거과정이나 의회 및 행정부에 로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국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up>30)</sup> 이들은 연방대법원에서의 소송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의견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sup>31)</sup> 이를 통하여 당해 단체의 정당성, 지지도, 명성 등을 향상시키고, 일반의 홍보 및 로비활동, 그리고 소송을 통하는 것에 비하여 자신의 이익 관철에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유이다.<sup>32)</sup>

둘째,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의 정부기관이다. 대표적으로 연방법무부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연방정부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법정조언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서를 제

이며,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전반적인 인 용률은 46%에서 63%를 기록하였다.

30) 손병권,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 아세아연구 통권 105호, 2001, 100면.

31) Paul M. Collins, Jr., “Friends of the Court: Examining the Influence of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U.S. Supreme Court Litigation”, Law and Society Review 38, 2004, 807면.

32) 김지영, 전개보고서(2013), 41면; Omari Scott Simmons, “Picking Friends from the Crowd: Amicus Participation as Political Symbolism”, 42 Connecticut Law Review 185, 2009, 205면.

출하기도 한다.<sup>33)</sup> 그 외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한다. 법원 역시 정부기관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정부기관의 의견서는 최종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sup>34)</sup>

셋째, 법률 분야의 학자, 각종 전문가 단체 및 학회 등이 있다. 일례로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 Apple Inc. 사건<sup>35)</sup>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법학교수들이 법정조언자로서 삼성전자를 지지한 바 있으며,<sup>36)</sup>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sup>37)</sup>의 경우에는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17-1229 의견서,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16-1011 의견서, SAS Institute Inc. v. Joseph Matal, 16-969 의견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sup>38)</sup>

33) Karen O'Connor, “The Amicus Curiae Role of the U.S. Solicitor General in Supreme Court Litigation”, 66 Judicature 256, 1983, 257면.

34) Michael K. Lowman, “The Litigating Amicus Curiae: When Does the Party Begin After the Friends Leave?”, 41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1992, 1261면.

35)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 Apple Inc., No. 16-1102, U.S. Sup. (2016).

36) Document #78-170501-020B.

37) IPO는 1972년에 설립되었고,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정당한 권리자를 위한 단체이며, 의회, 특허청 등과 관계에서 회원들을 대표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법정조언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조영선, “미국의 특허 소송절차에 관한 고찰 - 법관의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법조, 53권 4호, 2004, 273면; <https://www.ipo.org/> 참고.

### 2.3.2 법정조언자의 소송상 지위

법정조언자는 원칙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역할에 제한이 있다. 법정조언자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보조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므로 법정조언자가 제기한 법적 쟁점 등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sup>39)</sup> 법정조언자가 변호인을 도울 수는 있으나, 변호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한편, 법정조언자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소송참가인과 구분된다.<sup>40)</sup> 법정조언자는 소송참가인에 비하여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역할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조언자 제도가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법정조언자의 의견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던 제3자가 연방대법원의 심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조언자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법원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는 소송에 참가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41)</sup>

### 2.3.3 법정조언자의 소송 참여 절차

연방대법원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방대법원규칙 제37조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에 대한 조건, 절차 및 법정조언자 제도의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8) <https://www.ipso.org/index.php/advocacy/amicus-briefs>.

39) F.T.C. v. Phoebe Putney Health System, Inc., 133 S. Ct. 1003 (2013).

40) 김진한, 전계논문(2014), 202면.

41)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8면.

법정조언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양 소송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연방대법원규칙 37.2(a)). 양 소송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바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 일방 혹은 전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방대법원규칙 37.2(a)).

연방법무부 송무차관 및 주법무장관 등 정부기관이 법정조언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소송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직접 법정조언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연방대법원규칙 37.4). 한편, 연방대법원이 직권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42)</sup>

연방대법원규칙에는 법정조언자의 참여 및 의견서 작성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견서는 당사자 일방의 적법한 권한을 갖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적법한 소송대리 권한을 갖는 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에 근거한다.<sup>43)</sup>

## 2.4 평가

### 2.4.1 소송과정에서 조언 및 정보 제공 기능

법정조언자 제도는 제출된 의견서가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서 미처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이나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특별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중요한 순기능이 있다. 법원은 심리절차에서 직접 판단하기

42)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14면.

43)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14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법정조언자가 제공한 정보 및 조언 등을 통하여 부족한 능력을 보완 및 사법체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sup>44)</sup>

반면, 법정조언자의 의견서가 법원의 판단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sup>45)</sup> 본래 중립적 지위를 갖던 법정조언자와 달리 작금의 법정조언자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대변 및 보호함으로써, ‘법정의 친구’에서 ‘법정의 로비스트’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에 특정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며 의견서의 제출을 남용한다고 비판한다.<sup>46)</sup> 설사 제출된 의견서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견서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등의 소모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이 지적된다.<sup>47)</sup>

리처드 포스터(Richard Posner) 판사는 의견서 제출에 관한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sup>48)</sup> 여기에서 그는 의견서에 의하여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제출서면의 분량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사법절차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정조언자의 역할은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49)</sup> 아울러 중복된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이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완전한 소송대리를 받기 어렵거나 혹은 소송대리가 적절

하지 않은 경우, 법정조언자가 당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건에 이해관계 있는 자이거나, 법정조언자가 대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정보나 관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당사자에 의해 발견할 수 없는 아이디어·주장·이론·사실 또는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서를 인정하여야 함을 제시한다.<sup>50)</sup>

#### 2.4.2 전문분야에 대한 법원의 이해 능력 향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분야, 특히 전문소송에서와 같이 매우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고도화된 영역을 법원이 다루게 됨으로써 판단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성이 법원에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점차 과학적·기술적 증거를 다루어야 하거나 전문적 영역의 논의 등을 진행하는 등 법률 이외 분야에는 전문성을 갖지 않은 법원이 이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사안에서의 전문지식, 정보, 그리고 유의미한 관점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조언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문분야에서의 법정조언자의 역할은 사실상 당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sup>51)</sup>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 전문분야를 다루는 많은 단체가 법정조언자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많은 수의 법정조언자가 의견서 제출 시 왜곡된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경향이 있고,<sup>52)</sup> 이로

44) 김진한, 전계논문(2014), 200-201면.

45) S. Chandra MOHAN, 전계논문(2010), 22-23면.

46)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37면.

47) Fowler V. Harper and Edwin D. Etherington, “Lobbyists Before the Court”, 10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172, 1953 참고.

48) Ryan v.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n 125 F.3d 1062 (7th Cir. 1997).

49) Allison Orr Larsen, “The Trouble with Amicus Facts”, 100 Va. L. Rev., 2014, 1761면.

50) Allison Orr Larsen, 상계논문(2014), 1761면.

51) 김진한, 전계논문(2014), 200-201면.

인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은 왜곡된 내용으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sup>53)</sup> 특히, 연방대법원 단계의 사건의 진행과정에서는 법정조언자가 소송당사자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 역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에 의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조작된 정보나 방법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up>54)</sup> 또한 양소송당사자 간 법정조언자의 의견서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원이 전문가 배심원을 구성하여 의견서에 제시된 주장 및 증거자료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55)</sup>

#### 2.4.3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 기능

과거와 달리 법정조언자 제도는 중립적 조언자에서 점차 소송당사자를 대변하는 등의 역할로 변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변화를 인정한 이유로는 사안에서의 많은 법적 쟁점들이 단순히 당해 사안에 한정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법정조언자 제도가 이들을 대변해주

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sup>56)</sup> 따라서 기존 영향력에서 배제되던 사회적 약자들이 법정조언자를 통해 연방대법원 사건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sup>57)</sup>

반면, 지금의 법정조언자 제도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약자 보다는 경제적·정치적 강자의 편에서 주로 활용되며, ‘법정의 친구’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자의 친구’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sup>58)</sup> 이익집단 등 상당한 경제력 및 정치력을 보유한 집단은 많은 비용을 투입한 의견서를 통하여 공정성의 확보 뿐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정보와 이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견해이다.<sup>59)</sup>

### 3. 소프트웨어감정 제도 현안への 시사점

#### 3.1 소프트웨어감정 제도 관련 최근의 평가

최근 법원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감정제도에 관한 논의가 부쩍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는 몇 가지로 수렴되는데, 이는 ①감정서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②백지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감정결과의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점, ③실질적인 감정 준비기일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④사후 검증식 실무구조에 따른 절차적 비효율성이 있다는 점,<sup>60)</sup> ⑤정량적 유사도에 대

52)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The Supreme Court and Junk Social Science: Selective Distortion in Amicus Briefs”, 72 N.C. L. Rev. 91, 1993, 100면.

53)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상계논문(1993), 158면.

54)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전계논문(1993), 100면.

55) 김지영, 전계보고서(2013), 37-39면.

56) 김진한, 전계논문(2014), 200면.

57) Omari Scott Simmons, 전계논문(2009), 207면.

58) S. Chandra MOHAN, 전계논문(2010), 22-23면.

59) John Harrington, 전계논문(2005), 698-700면.

한 전문가적 해석·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⑥감정서의 내용을 변론과정에서 공방하고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sup>61)</sup> 등이다.

다소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의 평가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2.2%가 감정의 원인이 된 의도가 감정을 통하여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sup>62)</sup> 특히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감정이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3)</sup> 아울러 당시 저작권법상 감정제도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공정성에 가장 큰 만족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sup>64)</sup>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감정(유사도)이 일반저작물 감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만족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일반저작물감정이 5점 만점에서 4.40점을 얻은 반면, 소프트웨어감정(유사도)은 3.71점을 얻는데 그쳤다.<sup>65)</sup> 이러한 현상은 동 연구에서 감

정수준과 만족도 간 상관분석에서 설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신속성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6)</sup> 응답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조사에서도 소프트웨어감정의 경우 감정기간 단축 요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얻은 감정비용 감액(50명)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응답(90명)을 나타냈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소 정보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나마 앞선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거 기술적 정보의 원활한 확보 목적에서 점차 정확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증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련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재판결과에 감정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대리인들에게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인다. 앞선 최근의 논의가 주로 대리인들에 의한 주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련의 대응이 필요한데 감정결과를 대리인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요구되는 논의의 원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과거 단순히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로 역할이 변화된 감정결과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감정사항 및 대상의 확정, 구체적인 산출방식의 근거 등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3.2 법정조언자 제도와 비교 검토

첫째, 감정이 관여하여야 할 정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인 전문가의 증언을 주로 활용<sup>67)</sup>한다는 점에 법원은 법

60) 맹정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의 실무와 쟁점”, 지식재산권소송의 바람직한 실무와 개선방안, 서울지방법원,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2018, 60-62면.

61) 강태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의 실무와 쟁점에 대한 토론문”, 지식재산권소송의 바람직한 실무와 개선방안, 서울지방법원,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2018, 72-73면.

62) 김시열, 전계보고서(2013), 131면.

63) 김시열, 전계보고서(2013), 131면.

64) 전문성, 경제성, 공정성 및 신속성의 요소 가운데, 5점 만점 중 전문성 수준은 4.33점, 경제성 수준은 3.83점, 공정성 수준은 4.44점, 신속성 수준은 3.28점으로 도출되어, 공공영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가 무관함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시열, 전계보고서(2013), 134면.

65) 김시열, 전계보고서(2013), 138면.

66) 김시열, 전계보고서(2013), 139면.

67) 맹정환, 전계논문(2018), 62면.

정조언자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지만, 공적기관을 감정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조언자의 역할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법원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 역시 실질적으로는 감정결과와 재판에서의 영향력을 상당히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은 감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여야 함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공성이 보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법원이 놓친 사항을 감정이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감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종종 논의의 대상이 되던 점이 감정요청 과정에서 감정인에 인지된 오류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올바른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과 요청된 사항을 문언적으로 정확히 한정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것 중 어느 방향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법정조언자 제도는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놓치고 있는 정보의 제공 혹은 문제해결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 법정조언자의 이러한 역할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 역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 감정제도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공공성에 기댄 중립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재판부와 협력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석명권의 행사가 넓게 허용되지 않는 까닭은 석명권의 행사가 소송당사자 일방에 직접 작용하므로 민사소송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한 감정 과정에서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잘못 판단하거나 놓치고 있는 정보 등을 바로잡도록 감정기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석명권을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개인인 전문가에 의한 감정보다는 개인의 결합, 즉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감정 활용 문제

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 체계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개인인 전문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이다. 물론 촉탁의 경우 단체가 감정을 수행하기도 하나, 현재 저작권법상 감정 제도의 경우에도 촉탁에 기초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인 전문가에 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정조언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를 보면, 주로 사회단체 등, 정부기관, 전문가단체나 학회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들 중 개인이 법정조언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본 제도가 특정 사건에서 하나의 의견서만을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집단성을 의견서에 내포하는 것이 보통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뿐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전문소송은 그 분쟁의 대상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분야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특정 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더욱 하위의 세부분야를 기준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실무상 전문분야의 사건이라 하면 세부적 기술분야의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경우가 점차 늘어난다. 이때 어떠한 특정 세부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 개인에 의한 감정을 수행 시 다른 결합된 세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정도가 달라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생각건대, 감정을 수행하는 자를 점차 개인의 전문가 중심에서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단순히 전문가들의 물리적 결합만을 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넷째, 감정비용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정조언자 제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상당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약자가 소

송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점은 공적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법상 감정 제도의 경우 좀 더 깊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소송상의 제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경제적 약자라는 점만으로 어느 특정의 당사자에게 공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을 불문하고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적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무적으로 경제적 약자라 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적절할 것이다. 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별도의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도나마 제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감정결과 또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정조언자 제도에서 각 의견서들은 다시 법원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된다. 즉, 특정의 의견서가 유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 감정제도에서는 단일의 특정한 감정서가 최종판단에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보니, 감정결과가 도출된 이후 오히려 당사자 간 공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사전에 논의점들을 정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에 사후적 논의에 대해서 소송당사자 쌍방의 공격권 혹은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실제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저작권법이 정하는 틀과 기술영역에서의 틀을 적절히 고려한 낮은 수준이나마 표준화된 틀을 마련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 결론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과 운영형태는 다르지만 법원이 적절히 살피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한 사실확정을 도와준다는 점에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와 우리 저작권법 제119조의 감정 제도는 상호 비교하여 살펴볼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사감정(私鑑定)과 공감정(公鑑定)의 중간 형태를 갖는 법정조언자 제도는 공감정의 형태를 갖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감정 제도와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전제를 갖는다. 그럼에도 두 제도는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에 양자를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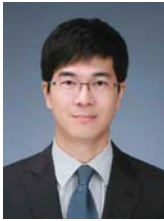
여러 필요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저작권법상의 감정 제도가 소송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기술적 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만을 제시하던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그러한 기조가 현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작금의 환경은 감정제도에 좀 더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운영 현실과 제도적 요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간격의 발생은 결국 제도가 현실에 작용함에 있어서 그 적절성이 낮아진다는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물론 저작권법상의 감정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실제 감정을 수행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야 공적감정제도 도입의 주요문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

- 분석, 2016.
- [2]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3] 김시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세창출판사, 2018.
- [4]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3.
- [5] 김진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 손병권,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 아세아연구 통권 105호, 2001.
- [7] 조영선,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 관한 고찰 - 법관의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 법조, 53권 4호, 2004.
- [8] 조재현, “헌법재판에서 법정조언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46호, 2014.
- [9] Allison Orr Larsen, “The Trouble with Amicus Facts”, 100 Va. L. Rev., 2014.
- [10]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In Quiet Term, a Drop in Amicus Curiae at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Law Journal, ALM Publication, Jnn. 2017.
- [11] Anthony J. Franze and R. Reeves Anderson, “In Unusual Term, Big Year for Amicus Curiae at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Law Journal, ALM Publication, Sep. 2016.
- [12] Black’s Law Dictionary(8th ed), 2004.
- [13] Frank M. Covey Jr., “Amicus Curiae: Friend of the Court”, 9 DePaul L. Rev. 30, 1959.
- [14] Fowler V. Harper & Edwin D, Etherington, “Lobbyists Before the Court”, 10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172, 1953.
- [15] Helen A. Anderson, “Frenemies of The Court: The Many Faces of Amicus Curiae”, 49 U. Rich. L. Rev. 361, 2015.
- [16] John Harrington, “Amici Curiae in the Federal Courts of Appeals: How Friendly Are They”, 55 Case W. Res. L. Rev. 667, 2005.
- [17] Joseph D. Kearney and Thomas W. Merrill, “The Influence of Amicus Curiae Briefs on the Supreme Court”, 148 U. Pa. L. Rev.743, 2000.
- [18] Karen O’Connor, “The Amicus Curiae Role of the U.S. Solicitor General in Supreme Court Litigation”, 66 Judicature 256, 1983.
- [19] Michael K. Lowman, “The Litigating Amicus Curiae: When Does the Party Begin After the Friends Leave?”, 41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1992.
- [20]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The Supreme Court and Junk Social Science: Selective Distortion in Amicus Briefs”, 72 N.C. L. Rev.91, 1993.
- [21] Omari Scott Simmons, “Picking Friends from the Crowd: Amicus Participation as Political Symbolism”, 42 Connecticut Law Review 185, 2009.
- [22] Paul M. Collins, Jr., Friends of the Supreme Court: Interest Groups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23] Paul M. Collins, Jr., “Friends of the Court: Examining the Influence of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U.S. Supreme Court Litigation”, Law and Society Review 38, 2004.
- [24] S. Chandra MOHAN, “The Amicus Curiae : Friends No More?”,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December 2010.
- [25] Steven Kochevar, “Amici Curiae in Civil Law Jurisdictions”, The Yale Law Journal 122(6), Apr. 2013.

저 자 소 개



김시열(Kim, Si-Yeol)

2012.8            송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7.6-2012.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6-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9-현재 송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2018.3-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주관심분야> 저작권 분쟁, 실질적 유사성



김민정(Kim, Min-Jeong)

2015.3-현재 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주관심분야> 지식재산권법